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

[수원지방법원 2014. 2. 17. 2013고합620,624(병합),699(병합),851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최태원, 김훈영(기소, 공판), 정재욱, 양동훈, 김도완, 최재훈, 이재만, 홍승표, 최두헌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(유한) 정평 외 13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에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.

별지8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,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, 순번 제3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7로부터 각 몰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2013. 8. 28. '◎◎3'으로 표기된 디브이디-알(DVD-R, PRINCD, 4.7MB)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의 점, 피고인 5에 대한 2013. 5. 1. 피고인 4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의 점 및 2013. 5.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